조기졸업 신청 안내

1. 관련

가. 학칙 제49조(조기졸업)

나. 학사운영규정 제112조(조기졸업)

다. 학사운영규정 제113조(조기졸업의 기준)

2. 2023년 전기(2월) 조기졸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가. 신청대상 : 7학기 등록자(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 : 6~7학기 등록자)

나. 신청기간 : **2022.09.07.(수) 까지**

다. 신청서류

1) **조기졸업신청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라. 제출처 (☏ 043-830-○○○○)

부서명	학과	연락처	사무실
사회문화대학	스포츠지도학과, 스포츠산업학과, 무예경호학과	8326	M1 601
	군사학과	8321	
	종교문화재학과, 한국어교육문화학과, 연극영화학과	8328	
	경찰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8325	
융합과학기술대학	소방방재학과, 융합디자인학과	8552	M2 704
	의약바이오학과, 의생명과학과, 식품산업학과, 말산업학과	8553	
	반도체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의료공학과, 컴퓨터공학과	8554	
의료보건대학	간호학과	8676, 8677 8678, 8673	i 301
	임상병리학과, 의료뷰티케어학과, AI의료공학과	8673	M2 704
	보건행정학과	8674	M2 704
	작업치료학과	8675	M2 704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항공서비스학과, 스마트운행체학과 항공정비학과, 항공기계공학과	8478	M1 601

마. 조기졸업 기준

1) 7학기 등록자(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 : 6~7학기 등록자)

2) 졸업최소이수학점 이상 취득

3) 총 평점평균 4.2 이상(2012학년도 이전 신입학자 : 4.0 이상)

4) 졸업논문(시험 등) 합격
5) 중원졸업인증제 합격
- 비교과영역「FOS 중원인」150시간 이상 이수(2015학번 이후)
- 포트폴리오 제출(합격자)
- SEN-Speaking Test(2010학번 이후) 합격자
- 언어능력(외국인 유학생 대상) 제출(합격자)

바. 조기졸업 대상 제외
1) 재학 중 1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았을 때
2) 편입생, 재입학생, 특별학생, 징계를 받은 학생

※ 위 "마" 호의 조기졸업 기준을 미충족 시 졸업불가로 다음 학기 정상 등록 필수!